

보도 일시 (인터넷) 2022. 8. 2.(화) 10:00 (지면) 2022. 8. 2.(화) 10:00	배포 일시 2022. 8. 1.(월) 15:30				
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책임자</td> <td>과장 이혜진 (044-203-6345)</td> </tr> <tr> <td>담당자</td> <td>사무관 유재우 (044-203-6318)</td> </tr> </table>	책임자	과장 이혜진 (044-203-6345)	담당자	사무관 유재우 (044-203-6318)
책임자	과장 이혜진 (044-203-6345)				
담당자	사무관 유재우 (044-203-6318)				

미수강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, 확인하고 반환 받으세요

-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-

주요 내용

-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시, 학습자가 이미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-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교지 기준 마련

- 「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이 8월 2일(화),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됨에 따라, 원격 평생교육시설*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,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.

* 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에 따라 신고 되어,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

<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 개선 예시 >

- (기존)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, 총 수업 시간(1개월)의 절반이 지난 경우, 학습비 전액 반환 불가
- (개선)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,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습비 반환

- 다만,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,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.
- 또한,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.

- 또한,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(이하 ‘전공대학’)의 교지 기준을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에 규정하여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·운영을 체계화한다.
 - 전공대학의 교지는 설립인가 및 학과·정원 증설·증원 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,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을 준용하고 있어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었다.
 - 이에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교지 기준을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에 규정하여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.
-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,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루어지고, 전공대학 관리·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세부내용

담당 부서	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혜진 (044-203-6345)
		담당자	사무관	유재우 (044-203-6318)
			사무관	우준성 (044-203-6248)

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학습비 반환) 원격 평생교육시설이 학습자가 실제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학습비 반환 기준을 보완하였다.
- (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) 전공대학의 교지 기준 조항을 신설하고, 해당 기준은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하였다.

동 개정으로 인해

-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적용되어, 학습자와 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등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공대학 관리·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0조(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) <u>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「<u>대학설립·운영 규정</u>」 제 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(校地)를 확보할 것.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<u>이 영 별표 6</u>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. 4. 제41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(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). 다만, 설치인가 시 	<p>제30조(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)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 제54조제4항에 따라 <u>전공과를 설치·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(이하 “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”이라 한다)로 전환하는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2.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(校地)를 확보할 것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6</u> ----- ----- --. 4. 제41조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(이하 “법정교원정원”이라 한다)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. 이 경우 법정교

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.

5. (생략)

<신설>

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, 설치인가 시 확보한 교원 외의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.

5. (현행과 같음)

제30조의2(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) 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·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. 이 경우 동일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.

②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.

1. 교지가 도로·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

2. 교지 경계선(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)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

3.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이 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 복지시설(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기존의 교지(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 복지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) 밖에 설치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른 교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교육·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.

1. 농장·학술림·사육장·목장·양식장·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

2. 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설

로 사용되는 시설·건축물의
부지로서 전문대학 학력인정
평생교육시설 전환인가를 받
은 자의 소유가 아닌 부지
3. 제30조제5호에 따른 수익용
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